

제 호

간선시설 및 공공편익시설 설치사업 시행자 지정 확인서

1. 사업시행자 및 대표자 성명 :
2. 사업시행자의 주소 :
3. 사업내용
 - 사업명 :
 - 위치 :
 - 시행기간 :
 - 규모 : $m(m^2)$
4. 시행자 지정조건 :

귀하를 「기업도시개발 특별법」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간선시설 및 공공편익시설 설치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광역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

직인